

참고자료. 온실가스 감축사업, 본격 시동 걸려

- 정부,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-

-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'0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해당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임
- 재정적인 인센티브 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함과 동시에,
 -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받아,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나,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아직은 감축의무부담*은 지지 않고 있음**

* 선진국들은 1차 의무 이행기간('08~'12)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.2%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부담을 받고 있음

** OECD 국가중 멕시코와 우리나라만이 계량적인 감축의무부담을 받고 있지 않음

- 그러나,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협상(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 관련)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
-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,
 - 철강,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이 배출저감 의무로 인해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임

◆ 제2차 공약기간 중('13~'17) 1995년 배출량 대비 5%를 감축하는 의무부담을 받는다면, 2010년부터 실질적인 감축을 시작할 경우 매년 실질GNP에 영향을 미침
- 2015년 기준 0.75%(11.3조원), 2020년 기준 1.51%(22.8조원) 감소

* 자료 : 에너지경제연구원

- 정부로부터 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(에너지 관리공단)에 등록하여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하는데,
 - 동 제도의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
- 영국, 일본,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의무부담 부과전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실적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정책을 운영중임
 - 캐나다에서는 등록소에 감축실적을 등록하고 자격규정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중이며,
 -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도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음

참 고

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

1.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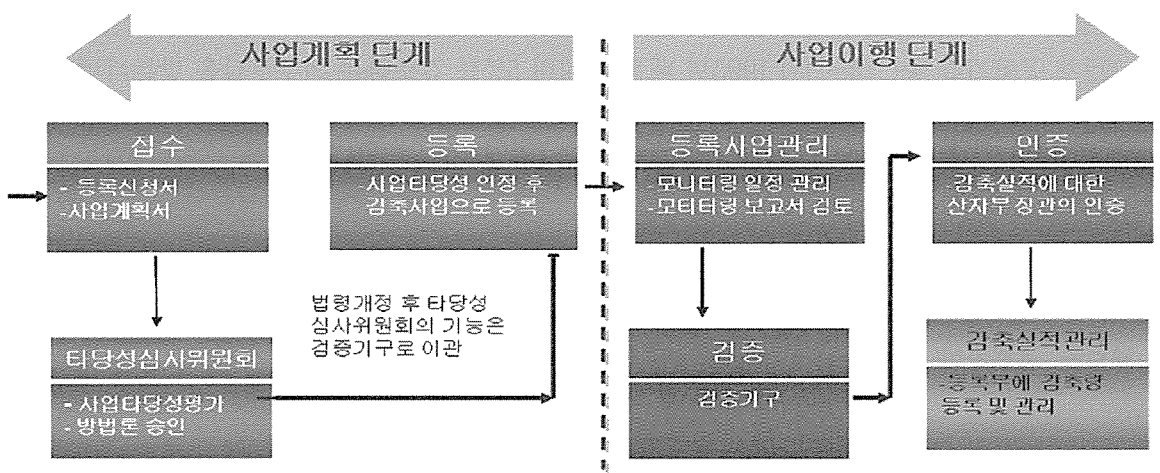
- 교토의정서가 발효('05.2.16)된 가운데 기업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이 필요한 상황
-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·관리하여 기업들이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
-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“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”를 개소('05.7.20)
 - * 법적 근거 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2, 『정부는 자발적 협약체결기업,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』

2. 등록소 개요

- 대상사업 : 일정규모 이상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
 -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
 - *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, 신재생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·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,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
 - 등록대상 온실가스 : 교토의정서상의 6개 온실가스(CO₂, CH₄, N₂O, PFC, HFC, SF₆)
 - 최소 감축규모 : 연간 500tCO₂(약 160TOE) 이상 감축 사업
 - 사업 기준일 : '04.1.1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
 - 다만,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 대책에 의하여 실시한 감축실적 등록시범 사업('03.1~'03.12)에 참여한 사업은 등록대상에 포함

□ 등록절차 :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 결정

- 등록 및 인증 절차



- 담당기관
 - 산자부(에너지관리공단 감축실적 등록소) : 접수·등록·인증 및 감축실적관리
 - 타당성 심사위원회 :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출 타당성 등을 심사
 - *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